



제 428회 국회 (임 시 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성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920호)

2025.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황 충 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동물 사체의 수의학 교육·연구 활용 근거 마련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성윤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6. 18.

3. 회 부 일 : 2025. 6.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마취 등의 인도적인 방법으로 안락사하고, 동물의 사체가 발생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공설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안락사된 유기견 등을 해부실습용으로 활용하게 할 경우 실험에 이용되는 동물의 수를 감소시켜 실험동물 복지에 기여할 수 있고, 수의과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실제 수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동물사체를 수의학 연구·교육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동물보호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동물의 사체가 발생한 경우 수

의학에 관한 연구 및 교육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복지 향상과 수의학 발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3항 단서 신설).

Ⅲ. 검토의견

1. 동물 사체의 수의학 교육·연구 활용 근거 마련

개정안은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사체가 발생한 경우, 수의학에 관한 연구 또는 교육을 위하여 해당 사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3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① · ② (생략) ③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의 사체가 발생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제6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 및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u><단서 신설></u>	제46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u>다만, 수의학에 관한 연구 및 교육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마취 등을 통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여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안락사된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동물장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 또는 공설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¹⁾

그런데, 최근 수의과대학 현장에서는 해부학 실습 및 임상교육을 위한 실습용 동물 사체 수급이 어려워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으며, 별도의 실험동물을 사용할 경우 동물복지 관점에서도 부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최근 3년간(2022~2024년) 구조된 유기동물 중 인도적 처리된 수는 연평균 약 19,000여 마리에 이르며, 같은 기간 동안 자연사한 동물도 연평균 30,000마리 이상으로 나타남. 이러한 사체 중 일부를 적절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교육 및 연구에 활용한다면, 수의학 실습의 현실적 문제를 완화하고 실험동물 사용을 줄여 동물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연도별 구조동물 보호·관리 현황]

구분	총 구조동물수	보호중	반환	입양	기증	자연사	인도적 처리	기타*
2024	106,824	14,437	12,188	25,136	4,101	29,368	19,712	1,882
2023	113,072	15,093	13,628	27,343	3,318	31,238	20,346	2,106
2022	113,440	14,157	14,031	31,182	2,375	30,490	19,043	2,162

- 1) 「동물보호법」 제46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①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취 등을 통하여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는 수의사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된 약제 관련 사용기록의 작성·보관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의 사체가 발생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제6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 및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이에 개정안은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보호조치 중 동물의 사체가 발생한 경우, 기존의 처리 방식 외에도 수의학에 관한 연구 및 교육 목적으로 사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수의학 교육의 질 제고와 실험동물 희생 최소화, 동물복지 정책의 연계라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다만, 유기동물 사체의 교육·연구 목적 활용은 동물의 존엄성과 생명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사체 제공의 대상·절차 등 제도의 설계 및 시행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유기동물은 구조·보호·입양을 통해 생명을 존중받아야 할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사체를 실습·연구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동물을 단순한 수단으로 도구화한다는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으며, 특히 사체 제공과 관련한 사전 동의 절차 부재, 제공 대상의 자의적 확장 가능성, 제공 과정의 관리 기준 미비 등은 제도 도입 이후 안락사 남용이나 부적절한 운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의 “수의학에 관한 연구 및 교육 목적”을 “수의과대학 또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연구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의학 교육·실습 또는 동물복지 관련 연구” 등으로 목적과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법령에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하여 **동물보호단체**들은 개정안의 취지에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유기동물이 보호와 존중의 대상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고려할

때 동물 사체의 제공이 동물의 존엄성을 훼손하거나 안락사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특히 사체 제공의 목적·대상·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없이 단서 조항만으로 예외를 허용할 경우 제도의 오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²⁾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과대학 및 수의사 임상교육 현장에서 실습용 동물 사체 수급이 어렵다는 현실³⁾을 감안할 때, 동물보호센터에서 발생한 사체를 교육·연구 목적으로 제공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으며, 실습 대상이 되는 동물은 이미 자연사하거나 안락사된 개체이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실험동물 사용을 줄이고 동물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임.⁴⁾

다만,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사체 제공의 대상 기관, 절차, 윤리 기준 등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이를 위해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 2) ▪ **(동물권연구단체)** 동물의 사체를 효율적으로 재활용되어야 할 물건으로 취급하여 동물의 생명체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동물을 보호·입양하기 보다는 연구 및 실험에 이용될 사체를 공급할 목적으로 안락사를 시행하는 동물보호센터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이미 안락사된 동물을 수의과대학에 해부용으로 기증해 살아 있는 동물의 사용을 줄이는 것은 동물실험 3R 원칙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원칙적으로 찬성함. 다만, 사체 기증의 구체적인 목적, 대상, 요건, 절차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무한 상태에서 예외조항만 두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동물해방물결)**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되나, 연구 및 교육 목적으로 동물의 사체를 제공하는 경우 가급적 건강한 개체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기간을 보장하지 않고 안락사가 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안락사에 대한 일종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음.
- 3) **(대한수의사회)** 국내 수의과대학의 수의해부학 실습 관련 사체 수급이 어렵고, 수의사 평생 임상 교육 관련해서도 임상실습을 위한 사체가 필요한 상황임.
- 4)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표준운영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자연사하거나 마취 후 안락사된 동물의 사체를 이용한 해부’는 고통등급 A로 분류되며,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님. 이는 해당 실습이 동물에게 고통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로 분류되기 때문임.
-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3-47호,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표준운영가이드라인」, p.28)

문 의 처
02)6788-5425